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5. 5. 19. 지침 제 5호
일부개정 2018. 2. 5. 지침 제 5-1호
일부개정 2025. 12. 4. 지침 제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5.>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5.>
   가. 의료중재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의료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중재원의 책무) ① 의료중재원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5.>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실,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제5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49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7조(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의료중재원은 부패행위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내부전산망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부패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서나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부패행위를 하는 자
3. 신고의 취지와 부패행위 내용 등
4. 조사·수사 과정 중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문맹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어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2.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어 우선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제9조(신고 상담·접수) 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은 감사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②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익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 신분공개 동의 여부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직접 조사·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중재원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준용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1.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 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18. 2. 5.>
6.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책임관은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통보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익명 신고로 인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제12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책임관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3조(비밀보장 등) ① 신고사항을 상담·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5.>

③ 책임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이 지침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조치 등"이라 한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5.>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자의 신청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⑧ 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 자신의 부패행위 등이 드러나거나,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은 제13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5.>

제18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의료중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③ 제2항에 따른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심의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등의 실시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5.>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감사실 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5. 12. 4.>
6.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7.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포상 등을 목적으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포상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징계 등) ① 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1.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4조 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책임관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5.>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4.>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 신고내용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 신 고 내 용				
증거자료 붙임서류				
비 고				

위와 같이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고 유형	신고자	신고 내용	담당자	처리 일자	처리 결과	비고
20××-00								

[별지 제3호서식]

처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부조리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귀 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분보장조치 등 신청서

요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받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 받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자세히 기술			
요구사항	※ 해당 항목에 "○" 표시, 기타의 경우 구체적 요구사항 기재 1. 불이익 원상회복( ) 2. 보직변경( ) 3. 징계보류( ) 4. 기타( ) * 기타 요구사항 :			
요구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구자 (인 또는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